

		시 민			
문서번호	세무과-9557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재일자	2016.4.29.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세입총괄팀장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2016년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운영계획

나 · 서울 · 너
SEOUL

2016. 4.

재무국
(세무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 민 참 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문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회 적 배 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 자 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 거 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 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기 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월 보도자료 제공
정 책 영 문 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바 른 우 리 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16년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운영계획

『‘16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시 관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개요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 세율 : 0.6~3.8%(소득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납세지 : 「소득세법」 제6~8조에 따른 납세지(주소지,거소지)
- 신고납부기간 : ‘16. 5. 1 ~ 5.31(성실신고대상자 6월30일까지)
- 과세기간 : ‘15. 1. 1 ~ 12.31

2 세입현황

- ‘16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세입목표 : 5,840억원
- ‘15년 확정신고(2014년 귀속분) 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분	합계		5월 신고납부		6월 신고납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523,702	471,706	371,888	149,402	151,814	322,304

* ‘15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징수액(5,259억원)의 89.7%

3

중점 추진 사항

- 홍보안내문, 중앙·지역언론, 각종 홈페이지, 전광판 등 이용 가능한 각종 매체 활용 전방위 홍보
-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신고·납부 및 ETAX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정보 제공
- 세무종합시스템 및 신고·납부시스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 운영

4

세부 추진 계획

- 대 시민 납세홍보 및 신고·납부 안내
 - 납부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신고납부 대상 개인 및 자치구 관내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 지방소득세 과세 개편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은 현재 ETAX, 시·구 홈페이지 게시 중에 있는 『2016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 활용

< '개인지방소득세' 중점 안내사항 >

- ▶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정하였고
- ▶ 세액 공제·감면사항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규정을 그대로 도입하여 지방소득세액은 국세 결정세액 10% 수준이며
- ▶ 2016년 까지 국세(소득세)와 동시 신고하고 납세지 지자체 별로 별도 납부 사항을 안내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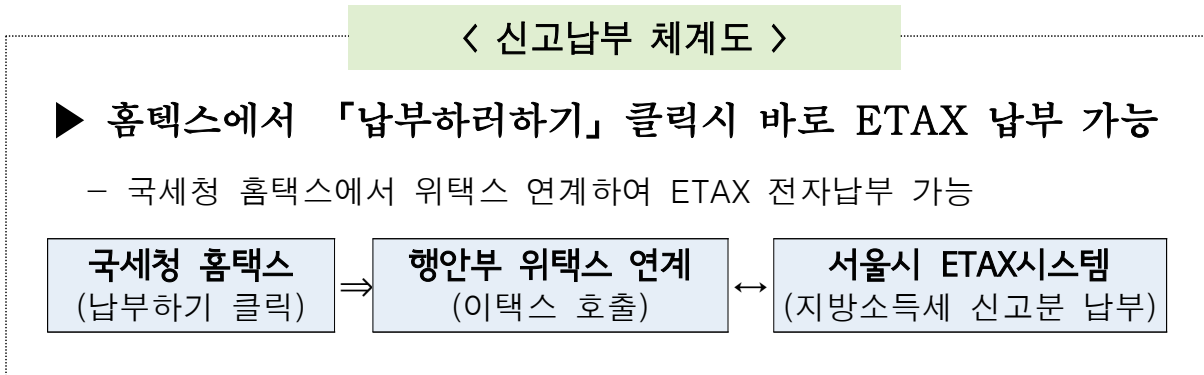
- ETAX,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기한 내 신고납부 홍보강화

○ 신고·납부 상담원 지정 운영

- 운영 기간 : 2016.5.1. ~ 6.30.
- 안내문 등 관련 홍보물 비치 및 민원상담 주요내용 기록관리
- 납기 마감(5/31) 근무일 3일전 부터 시·자치구·ETAX 연장근무
※ 자치구별 상담원 지정 사항 제출(붙임 서식)

□ 다양한 신고·납부 편의 제공

○ 국세(종합소득세)와 동시 지방소득세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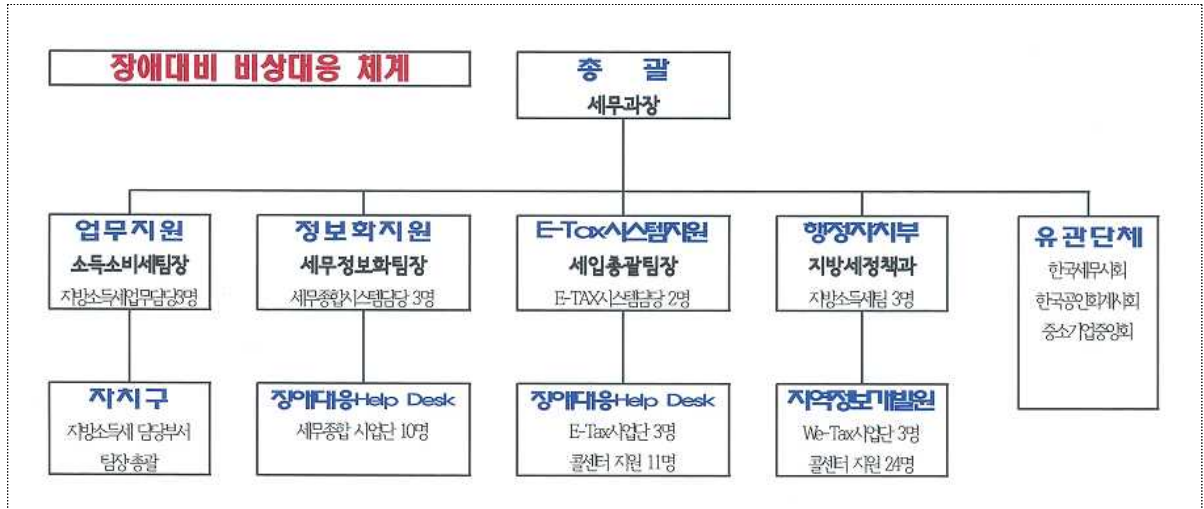


○ 국세(종합소득세)와 별도 지방소득세 납부

-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에 의한 금융기관, ATM 등 납부

□ 『비상대응체제』 구축·운영

- 세무종합시스템 및 신고·납부시스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 시 및 자치구, 장애대응 HelpDesk, 유관단체 등 비상대응체제 구축



○ 2015년 세무종합시스템 처리현황

- 일자별 처리현황

구 분	5.4일~27일	5.28(금)	5.29(토)	5.30(일)	6.1(월)
소요시간(초/건)	22.65	98.74	28.75	28.49	1693.99
처리건수(건)	32,147(일평균)	137,051	103,559	88,508	259,828

- 납기 마감일 처리 속도 지연 사유 : 신고 건수 폭증으로 처리 속도보다 신고속도가 더 빨라져 처리 소요시간 누증으로 지연

- 2016년 개선사항 및 대비책

- ▶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 사전 DB작업 실시(5.5.일한)
-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지연현상 예상시 병렬 분산처리 방법으로 변경하여 처리속도 향상

○ 전산 과부하 대비 납세자 신고납부 유의사항 안내

- 납세자·세무대리인에 대해 이택스 접속시기 분산 권고

▶ 강남권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 09:00~14:00, 그 외 지역은 이후 시간 시스템 이용 권장

- 신고·납부 집중예상 시기인 27일 이전 납부 권유

- 납기 마감일 전산시스템 장애로 가동정지 상황 발생 시 조치
 - 전화, FAX, 직접방문 접수 등을 통해 직원 직접입력으로 고지서 발급(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 동시부여) 또는 수기고지서(납세자 작성)로 납부 유도하고
 -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기한 연장조치 검토
- *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긴급상황 발생사실 및 납세자(대리인) 조치사항 등 전달하고, 유관단체는 각 회원들에 이메일 및 SNS 등을 통해 전파 (상황발생 1시간 이내)

기타 홍보 사항

-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등 유관 협회를 통한 납세자(대리인)에게 신고납부 홍보
- 신고·납부 집중 예상 시기인 납기 말 3일(5.27~5.31) 이전 납부 권유

5

행정사항

시본청 추진사항

- 2016.4.29 : 자치구 계획서 시달
- 2016.5월초
 - 전광판 안내 및 시 홈페이지 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세무사회 등 유관협회를 통한 납세자 홍보 요청
- 2016.5.9. : 자치구 직원대상 신고납부 운영 요령 교육
- 2016.5월중순 : 보도자료 배포

□ 자치구 추진사항

- 2016. 4.29.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시 운영계획을 참고 별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6. 5월초
 - 관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등 안내문 발송 및 공공장소에 비치
 - 현수막 게시, 전광판 및 구 홈페이지 안내(자체실정에 적합한 홍보 추진)
- 2016. 6.3.: 신고납부 현황 제출(6월 실적은 최종 7.5.제출)

- 따로붙임 : 1. 2015년 지방소득세 자치구별 신고·납부 현황. 1부
2. 신고·납부 안내문(안) 및 유의사항. 1부
3. ETAX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1부.
4.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실적제출. 1부.
5.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상담원 지정현황 1부 끝.

[별첨1] '15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현황(5.1~6.30)

(단위 : 건, 백만원)

합계	합계		수기납부		전자납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합 계	523,702	471,706	309,338	296,569	214,364	175,137
총 로 구	11,205	17,433	6,967	12,883	4,238	4,550
중 구	9,134	7,812	6,055	5,333	3,079	2,478
용 산 구	16,740	35,809	9,975	24,086	6,765	11,723
성 동 구	16,444	10,885	9,812	6,902	6,632	3,983
광 진 구	17,923	12,275	10,845	7,222	7,078	5,053
동대문구	17,364	6,206	10,895	3,926	6,469	2,280
중 랑 구	14,577	4,186	8,975	2,741	5,602	1,445
성 북 구	21,262	14,581	12,361	10,060	8,901	4,521
강 북 구	11,113	3,629	6,584	2,280	4,529	1,349
도 봉 구	13,477	4,608	7,799	2,657	5,678	1,951
노 월 구	20,585	7,640	11,355	4,396	9,230	3,245
은 평 구	18,328	7,163	10,247	4,175	8,081	2,989
서대문구	13,836	6,745	8,135	4,266	5,701	2,479
마 포 구	21,215	13,563	12,178	8,189	9,037	5,374
양 천 구	26,275	22,973	14,829	12,492	11,446	10,481
강 서 구	22,997	10,718	13,490	6,447	9,507	4,271
구 로 구	18,601	6,962	10,825	3,943	7,776	3,019
금 천 구	8,735	2,943	5,125	1,553	3,610	1,390
영등포구	22,028	14,293	13,009	8,908	9,019	5,384
동 작 구	19,527	10,784	11,191	6,381	8,336	4,403
관 약 구	18,969	6,537	11,192	4,177	7,777	2,360
서 초 구	43,519	77,423	25,655	48,240	17,864	29,183
강 남 구	56,505	120,565	34,378	77,105	22,127	43,460
송 파 구	43,194	37,162	25,596	22,897	17,598	14,265
강 동 구	20,149	8,811	11,865	5,310	8,284	3,501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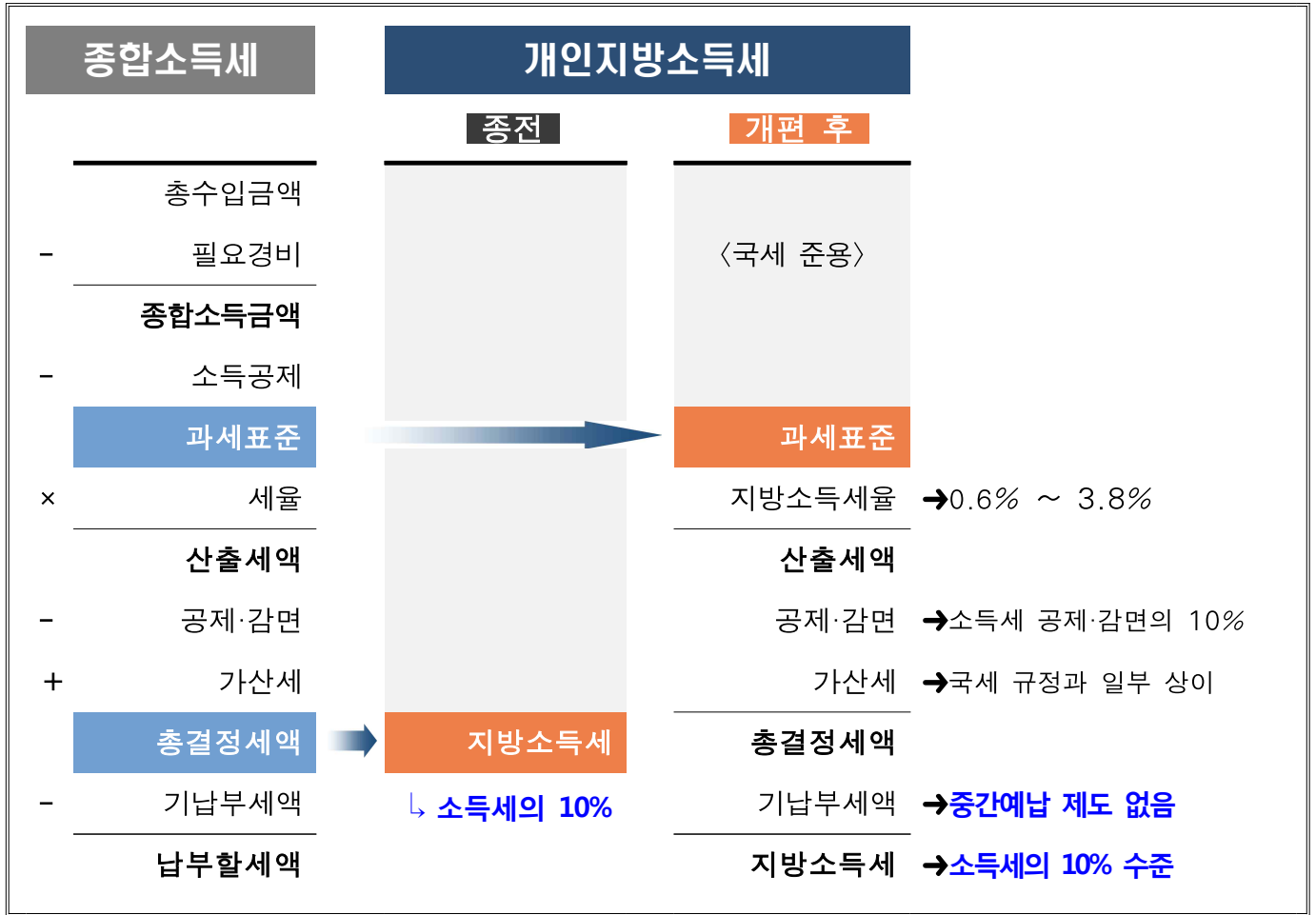
-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는 201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로서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한 '16. 5.1.~ 5.31까지(성실신고대상자는 6/30 까지) 입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함께 신고하며,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시신고를 통한 납부 및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행자부 WeTax시스템(<http://www.wetax.go.kr>)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 가상계좌, 카드납부, 인터넷뱅킹, ATM, 스마트폰, ARS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내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0,000분의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기 마감일에는 신고·납부 집중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구

□□□ 과 △△△ 팀

☎ [02] 2133-0001~2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안내



종전 소득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 왔으나, '14년 이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3.8%),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 수준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 납부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② 납세지는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지 지정제도는 지방세 규정에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 4,600만원 이하	72,000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8,800만원 이하	582,000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1.5억원 이하	1,590,000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원 초과 ~	3,760,000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⑤ 세액공제 · 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규정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감면되는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⑥ 가산세는 국세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등 국세와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국세> 1개월 내 50%, 6개월내 20% 감면 <지방세> 1개월 내 50%. 6개월 내는 규정 없음
- 「지방세법」 제99조에서 「소득세법」 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그 더하는 금액의 10%를 지방세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장 불성실,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7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서울, 세액공제감면 등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으나,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 서식)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16.3.16.>

작성방법

지방소득세란: ④ 과세표준란에는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④ 서울란·④ 산출세액란에는 서울표에 소득세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서울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④ 세액감면 및 ④ 세액공제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④와 ④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④ 가산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에 따라 ④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단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기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④ 추가납부세액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④의 100분의 10에 금액을 적습니다. ④ 기납부세액은 ④종합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4년~2015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서울	누진공제액	서울	누진공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3.8%	1,940천원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
총 합 소 득 금 액	①			
소 득 공 제	②			
과 세 표 준	(①-②)	③	④ 소득세 과세표준	⑤
세 율	⑥		⑦ 지방세법상 서울	⑧
산 출 세 액	⑨		⑩ ③×⑥-누진공제액	⑪
세 액 감 면	⑫		⑬ ⑫의 10%	
세 액 공 제	⑭		⑮ ⑭의 10%	
결 정 세 액	(⑨-⑫-⑭)	⑯	⑰ ⑯-⑬-⑮	⑱
가 산 세	⑲		⑳ ⑲의 10%	㉑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㉒		㉓ ㉒의 10%	㉔
합 계	(⑯+⑲+㉓)	㉕	㉖ ㉕-⑬-⑮	㉗
기 납 부 세 액	㉘		㉙ (㉘-중간예납)④ 10%	㉚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㉕-㉘)	㉛	㉜ ㉛-㉙	㉝
납부특례세액	차 감	㉞		
	가 산	㉟		㊱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㊲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㉛-㉞+㉟-㊲)	㊳	㊴ ㉛-㉜	㊵

⑧ 전자 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동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며,
- 이택스 및 위택스와 연계하여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

[별첨3] ETAX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 ETAX 접속(<https://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분 순으로 선택하여 → 납세의무자 정보 → 신고내역 → 산출세액 등 입력, 하단에 신고하기 클릭 → 납부



□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전 은행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은행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신용카드 납부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카드사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납부가능 카드 : 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외환, KB국민, NH, 하나, 씨티, 광주, 전북VISA, 제주VISA, 수협

※ 이 외 카드는 사용할 수 없음

[별첨4]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실적 제출

(○ ○ 구)

신고·납부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납기후 포함(6.30기준)		2016. 5. 31일까지		비고
신고납세자	신고세액	신고납세자	신고세액	

홍보 실적

(단위 : 건, 개소)

인터넷	안내문 발송	지역신문·방송 등	납세상담원지정 및 상담 실적	기 타

기타사항(수범사례·제도개선 등)

